##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95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 박덕흠 • 이헌승 • 박정하

고동진 · 김성원 · 최은석

김소희 • 윤영석 • 박상웅

김민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하고, 이러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에 대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하여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거짓 광고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철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여 모집 광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방지하고, 주택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6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모집주체가 제11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 획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조합 가입 청약 철회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		
입비 등의 반환) ① (생 략)	입비 등의 반환) ① (현행과 같		
	<u>о</u> )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2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			
다. <u>&lt;단서 신설&gt;</u>	만, 모집주체가 제11조의5제2항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하여 조		
	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주택조합 가		
	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u>있다.</u>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